

2000. 12. 1

조례안심사보고서

- 충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
-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증
개정조례안

산업건설위원회

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공원사용조례 폐지조례안	11. 24	11. 24	12. 1	12. 1	산림녹지과
충주중소기금육성기금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	"	"	"	"	지역경제과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충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시민의 건강,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1995년에 제정된 본 조례는 제2조의 허가 대상이 공작물설치, 물품판매등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를 공원사용허가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9년도에 제정된 충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와 중복되어 이를 폐지 하고자함.

2) 주요골자

- 조례의 폐지

나.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수안보관광특구지역내 시설현대화를 위한 숙박업 및 음식점 개.보수 자금을 금융기관의 저리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대출금의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우선 지원하고 일반회계에서 충당받음으로써 수안보 지역의 관광산업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.

2) 주요골자

-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에 기금이 예치된 시금고가 아닌 타 시금고에도 시장이 협약을 체결하여 저리알선한 자금의 이자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
- 업체의 대출 한도액 및 기간을 현재의 2억원, 2년 이내에서 수안보 관광특구지역의 업체에 한하여 5억원,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충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

-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.1.14일자로 공포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1999.8.14일 이후 운영실적이 없는 반면 충주시도시공원.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로 대체 운영하므로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나.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- 수안보 관광특구 지역에 이용시설이 노후화 및 협소한 관계로 이용을 기피하므로
- 숙박시설 및 음식점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개보수 자금을 금융 기관으로부터 저리자금으로 융자지원 알선과
- 수안보관광특구 지역의 업체에 한해서 대출금의 한도액을 2억 원에서 5억원으로 하고 상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.답변 요지

가. 충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

▶질의 : 공원사용조례 제정후 사용허가 실적은?

○답변 : 허가 민원신청자 없음.

▶질의 : 이 조례가 폐지되면 공원내 공작물 설치도 허가를 받지 않는지?

○답변 : 충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조례에 적용받아 허가를 처리 할 것임.

▶질의 : 전혀 불필요한 것을 조례로 제정한 것인지?

○답변 :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임.

▶질의 : 공원에서 집회할 경우에도 사용료를 안받는지?

○답변 : 경찰서에 집회신고만 하면 상위법에서 규제완화 차원으로 사용허가 신청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음.

▶질의 : 칠금동 스포츠단지는 어떻게 되는지?

○답변 : 거기는 칠금관광단지 임.

나.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지원해주면 수안보 관광특구지역에 특혜는 주는 것 같은데?

○답변 : 수안보지역 시설이 노후되어 운전자금이 아니고 시설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임.

▶ 질의 : 다른 지역의 경우도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 주는 방안은?

○답변 : 업체별 조사하여 검토해 보겠음.

▶ 질의 : 시중금리가 변동되면 미자금도 변경되는지?

○답변 : 거의 변동되지 않음.

▶ 질의 : 지원자금 규모는?

○답변 : 우선 50억 정도로 구두협의 하였음.

▶ 질의 : 중소기업창업자금등의 금리는?

○답변 : 8.2%이며 우리보다 2% 비싼 실정임.

▶ 질의 : 지원에 따른 추가예산 편성 계획은?

○답변 : 추가 기금출연 계획은 없으며 기존 기금내에서 지원하는 것임.

5. 심사결과

가. 충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: 원안가결

나.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6. 별 임

가. 충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1부

나.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